

1. 개정이유

수·위탁 불공정거래에 대한 직권조사 시정명령제 도입 등의 내용으로 「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2020.10.20일 공포, 2021.4.21.일 시행예정)됨에 따라,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수탁·위탁거래 우수기업의 선정 및 포상 기준(안 제5조의3 개정)

- 1) 개정법률은 준수사항 신설 등 직권조사 대상이 되는 위법행위 유형을 추가
- 2) 이에 수탁·위탁거래 우수기업 선정 근거 조항 번호를 수정하고, 우수기업 선정 기준에 신설된 준수사항 등을 포함

나. 벌점 부과를 위한 근거 조항 및 위반행위 유형(안 제5조의4 개정)

- 1) 개정법률은 위탁기업의 준수사항을 신설하는 등 직권조사 대상 위법행위를 추가하고, 규정을 위반한 위탁기업에 부과되는 벌점 관련 사항을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
- 2) 이에 위탁기업 준수사항으로 신설되는 등 직권조사 대상에 추가된 위법행위에 대한 벌점부과 기준을 규정하고자 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 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27조제3항”을 “법 제27조제5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법 제21조부터”를 “법 제21조, 제22조, 제22조의 2,”로, “제25조제1항”을 “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”으로 한다. 제5조의4제1항 중 “법 제27조제5항”을 “법 제27조제7항”으로, “제25조제1항”을 “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“법 제27조제5항”을 각각 “법 제27조제7항”으로 한다.

별표 제1호가목 중 “법 제27조제5항”을 “법 제27조제7항”으로 하고, 같은 표 제2호가목1) 위반유형 나)의 법 위반행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법 제22조의2제7항 위반행위
법 제25조제1항제1호 위반행위
법 제25조제3항 위반행위

별표 제2호가목1) 마)를 바)로 하고, 같은 1) 마)의 법 위반행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법 제23조 위반행위
법 제25조제1항제3호 위반행위
법 제25조제1항제5호 위반행위
법 제25조제1항제7호 위반행위
법 제25조제1항제9호 위반행위
법 제25조제1항제10호 위반행위
법 제25조제1항제11호 위반행위
법 제25조제1항제13호의2 위반행위

별표 제2호가목1)에 마)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마) 기술자료 관련 위반	법 제25조제1항제12호 위반행위
	법 제25조제2항 위반행위

별표 제2호가목2) 가) 중 “제2항”을 “제4항”으로 하고, 같은 2) 다) 중 “법 제28조제3항”을 “법 제27조제2항, 제4항 및 법 제28조제3항”으로 하며, 같은 2) 라) 중 “법 제27조제1항·제2항”을 “법 제27조제3항·제4항”으로 하고, 같은 표 제3호가목1) 중 “법 제27조제3항”을 “법 제27조제5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1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5조의3(수탁·위탁거래 우수기업의 선정 및 포상 등) 중소기업부장관은 <u>법 제27조제3항</u> 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을 수탁·위탁거래 우수기업으로 선정하고 포상 등을 할 수 있다. 1.·2. (생략) 3. 직전 사업연도 중에 <u>법 제21조부터 제23조 및 제25조제1항</u> 을 위반한 사실이 없을 것 4. (생략)	제5조의3(수탁·위탁거래 우수기업의 선정 및 포상 등) ----- ----- <u>법 제27조제5항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제5조의4(별점의 부과기준 등) ① <u>법 제27조제5항</u> 에 따라 중소기업부장관이 법 제21조, 제22조, 제22조의2, 제23조 또는 <u>제25조제1항</u> 을 위반한 위탁기업에 대하여 별점을 부과하는 때에는 별표의 부과기준에 따른다. ② <u>법 제27조제5항</u> 에서 “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”란 별표에 따른	제5조의4(별점의 부과기준 등) ① <u>법 제27조제7항</u> ----- ----- ----- <u>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</u> ----- ----- -----.
	② <u>법 제27조제7항</u> ----- ----- -----

누산점수가 5점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.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<u>법 제27조제5항</u>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 여부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.	----- -----. ③----- <u>법 제27조제7항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---	---